

힐스테이트 영광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 공급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17층~20층 / 8개동 / 총 4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7세대(기관추천 41세대, 다자녀가구 49세대, 신혼부부 82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41세대 포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괄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 구분 | | 84A | 84B | 합계 |
|-----|---------------|--------|--------|--------|
| 1 | 국가유공자 | 4(4) | 4(4) | 8(8) |
| 2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4(4) | 3(3) | 7(7) |
| 3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4) | 3(3) | 7(7) |
| 4 | 중소기업 근로자 | 4(4) | 4(4) | 8(8) |
| 5 | 장애인 | 전라남도 | 3(3) | 3(3) |
| | | 광주광역시 | 3(3) | 2(2) |
| 합 계 | | 22(22) | 19(19) | 41(41) |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 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 40% 선정합니다

II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일정

※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2.05.20.(금)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신문 및 힐스테이트 영광 홈페이지(www.hillstate-hec.co.kr/yg)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
| 사이버 견본주택 | 2022.05.20.(금)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사전 일반 관람 불가) - 힐스테이트 영광 홈페이지(www.hillstate-hec.co.kr/yg)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22.05.30.(월)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08:00~17:30) ■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인터넷 청약 권장) - 구비서류 : 자격확인 서류 지참 또는 청약자 본인 공동인증서 |
| 당첨자 발표 | 2022.06.09.(목)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자격확인 서류)지참 시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가 허용됩니다.(은행창구 접수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오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청약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네이버, KB 모바일 및 은행)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 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당사가 소명 요청을 안내한 날 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IV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조건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div>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 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 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VI

특별공급 자격확인 서류

※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계층 특별공급 대상자 중 건본주택 방문 청약 접수 시 아래 서류를 지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주민등록증 | |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인감증명서 |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 발급용) |
| | 인감도장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 | 복무확인서 |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0.)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
|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세”로 발급)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 | 주민등록증,인장 | 대리인 |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상기 서류는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 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 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대리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 신청을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영광

공급세대수

총 493세대 (84㎡~113㎡)

홈페이지 주소

www.hillstate-hec.co.kr/yg

수탁자 (주)무궁화 신탁

시공자 현대엔지니어링(주)

위탁자 지오파트너스(주)